

제 1999호
2011. 6. 2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관 광 공 보 과 장 이 용 갑
전화: 3396-4963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 제2011-438호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 제2011-44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
- 고 시
 - 제2011-33호 :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13
 - 제2011-34호 :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14
 - 제2011-35호 :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16
 - 제2011-36호 :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17
 - 제2011-37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9
- 규 칙
 - 제532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2
 - 제5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32
 - 제534호 : 서울특별시 중구투자심사업무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4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3 / FAX.(02)3396-4322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 438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년 06월 22일 ~ 2011년 07월 21일(30일간)
2. 보관장소 : 기전산업-주 서울폐차영업소장(성동구 성수동2가 271-27 ☎ 02-498-4442)
수원폐차산업-주 서울폐차영업소장(성동구 성수동1가 13-477
☎ 02-464-2980)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1년 07월 22일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서울44노7922 외 3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 라.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같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3396-6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폐차) 대상 자동차 내역

[공고기간 : 2011. 06. 22 ~ 2011. 07. 21]

연번	관리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보관장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명	사용본거지		
1	2010-24	서울44노7922 (스타렉스)	(주)로트앤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시 중구 을지로7가 105번지 라모도쇼핑몰 뒷골목 (기전산업-주 서울폐차영업소)	○강남구청(세무2과,교통지도과, 환경청소과,교통행정과),대구중구청(교통행정과),강남경찰서(교통과),서울중구청(교통지도과),노원구청(교통지도과),도봉구청(교통지도과),성남시(중원구 건설과),고양시(일산구 산업교통과),동대문구청(교통지도과),중랑구청(교통지도과),파주시청(도시관리과)
2	2010-28	85류9118 (이스타나)	표경일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서울시 중구 흥인동 142-1 남화주차장 내 (수원폐차산업-주 서울폐차영업소)	○서울성동경찰서(교통과),성동구청(환경위생과,교통행정과),서울중구청(교통지도과),강북구청(교통지도과),동대문구청(교통지도과),대구시북구(교통과) ○단독저당 -을부번호:2711-2001-003155 -채권자:LG캐피탈(강남구 역삼동679번지) -저당금액:2,500천원
3	2010-30	06노7647 (아벨라)	박창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40-15(환일고등학교 담말) (수원폐차산업-주 서울폐차영업소)	○서대문구청(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서울중구청(교통지도과),서울서부경찰서(교통과),용산구청(교통지도과),마포경찰서(교통과),마포구청(교통행정과,세무1과)
4	2010-37	서울32마7182 (르망오토)	NICHOLAS WILLER VAN GELDER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주차장 (수원폐차산업-주 서울폐차영업소)	○용산구청(교통행정과,세무2과, 환경관리과,교통지도과),용산경찰서(교통과),서초구청(주차관리과),서울시청(교통계획과)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 444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 운영 ·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

- 여성회관 종사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사용 프로그램 수강료의 관리, 이용자의 의무, 제한사항 등

나. 여성회관 운영조직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 여성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

다. 여성회관 운영관련 세부사항 규정(관련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405, FAX:02-3396-4333, E-mail : ryugrace7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 ①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상근직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관장 : 여성회관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관리 등
3. 서무담당 : 일반행정, 예산회계, 홍보 등
4. 취업관련 상담자 : 창업지원 및 교육, 취업 정보제공·상담·알선 등
5.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제3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회관의 직원중 관장, 교육훈련 및 정보화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관장 :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다만,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제4조(직원채용) ① 관장은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관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관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③ 구청장은 보고받은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여성회관의 직원을 채용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계약) ① 여성회관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성회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④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수탁 대상 및 범위
3. 위탁금 교부시기
4. 위·수탁 관련 제반사항

제6조(사업의 종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으로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능 교육
2. 여성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
3. 여성의 취업정보 제공 및 각종 상담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회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당해 연도 징수계획
5. 여성회관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8조(관리비 등)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체간 상호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다.

제9조(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여성회관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험 예방 등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여성회관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여성근로자 또는 지역주민 여성
2. 중소기업체 대표
3. 여성회관 관련 부서의 팀장
4.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예산의 집행) ① 수탁자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독립계좌를 신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매분기말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실적 및 결산) 수탁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및 실적서
2. 수강신청자 및 기타 이용자 명부
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회계관련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5. 물품관리대장
6. 소속법인 등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7.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신청) 수탁자는 매분기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지침 등의 시행)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 - 33호

지적측량기준점성파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파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측량기준점 명 칭 및 번 호	평면직각중횡선수치		소 재 지	측량년월일
	X(m)	Y(m)		
지적도근점 156	450909.68	198388.05	회현동2가 1-1	1991.11.18
160	450917.88	198467.04	회현동2가 8-5	1991.11.18
기준원점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보관장 소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 고	폐 기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 - 34호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정비구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 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485호(2008.12.2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중구고시 제2008-45호(2008.6.25)로 사업시행 인가된 우리 구 관내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11번지의 81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빅진씨앤디 대표이사 주성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48번지 우진빌딩3층

4. 준공인가내역

가. 토 지

시 행 면 적			비 고
계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8,773.4㎡	4,693.6㎡	4,079.8㎡	

나. 건 물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2,164.43㎡	건폐율 : 46.11%
연 면 적	66,799.07㎡ (지상:46,762.46㎡ , 지하:20,036.61㎡)	용적률 : 996.3%
층 수	지상24층, 지하6층	높 이 : 107m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고시로 준공의제 처리됨

6. 관련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3396-5782) 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 - 35호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대 상 시 설(지 역)			해 제 사 유	지 정 등 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지역)명	소재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서-서 1,2구역 제1-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의주로1가 1-4호외 2필지 (일대)	농협중앙회	준공인가 (인가일:2011.05.27)	D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 - 36호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 및 건설부고시 제104호(1976.07.14)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05.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4호(2007.08.16)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07-97호(2007.12.20)로 사업시행 인가된 중구 수표동 88-1호외 70필지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88-1호 외 70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두산에이엠씨 대표이사 전형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5
4. 준공인가 내역
 - 토 지

시 행 면 적			비 고
계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8,460.7㎡	6,933.9㎡	1,526.8㎡	

○ 건 물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4,159.18㎡	건폐율 : 59.98%
연 면 적	99,991.11㎡ (지상:64,065.07㎡, 지하:35,926.04㎡)	용적률 : 923.94%
층 수	지하6층 / 지상17층	높이 : 75.24m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용도 : 업무시설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고시로 준공의 제 처리됨

6. 관련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3396-5774) 비치도서와 같음].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 - 37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좌표 (GRS80타원체)		경위도(GRS80타원체)			평면좌표 (베셀타원체)	
	중선좌표 (X)	횡선좌표 (Y)	위도	경도	타원 체고	중선좌표 (X)	횡선좌표 (Y)
		별		첨			
기준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1년 5월 26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별첨	별첨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기준점 성과내역

기준점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경위도(GRS80타원체)		소재지
	중선좌표(X)	횡선좌표(Y)	중선좌표(X)	횡선좌표(Y)	위도(B)	경도(L)	
8950	552041.031	198893.264	451735.140	198822.400	37-33-54.3752	126-59-12.0098	장교동 23-1
8951	552042.609	198924.345	451736.710	198853.480	37-33-54.4263	126-59-13.2764	장교동 23-1
8952	551954.049	198920.657	451648.160	198849.790	37-33-51.5538	126-59-13.1265	장교동 23-1
8953	551958.997	198974.401	451653.110	198903.540	37-33-51.7146	126-59-15.3169	수표동 85-7
8954	551960.603	199033.791	451654.710	198962.930	37-33-51.7667	126-59-17.7372	수표동 58-16
8955	552053.947	199029.716	451748.070	198958.860	37-33-54.7952	126-59-17.5708	수표동 65-5
8956	551114.230	198464.132	450808.390	198393.260	37-33-24.3097	126-58-54.5286	회현동2가 73
8957	551151.507	198450.713	450845.660	198379.840	37-33-25.5186	126-58-53.9814	회현동2가 1-32
8958	551165.773	198494.666	450859.930	198423.780	37-33-25.9818	126-58-55.7718	회현동2가 10-33
8959	551184.551	198550.481	450878.710	198479.590	37-33-26.5914	128-58-58.0458	회현동2가 8-5
8960	551223.909	198541.918	450918.060	198471.030	37-33-27.8678	128-58-57.6967	회현동3가 9-19
8961	551219.309	198475.616	450913.460	198404.720	37-33-27.7182	128-58-54.9947	회현동2가 1-1
8962	551203.447	198444.697	450897.590	198373.800	37-33-27.2032	128-58-53.7349	회현동2가 1-32
8963	551109.923	198317.858	450804.060	198246.970	37-33-24.1683	128-58-48.5676	회현동1가 206-2
8964	551051.056	198345.456	450745.200	198274.570	37-33-22.2591	128-58-49.6927	회현동1가 36-4
8965	550987.214	198347.797	450681.370	198276.910	37-33-20.1885	128-58-49.7886	회현동1가 60-16
8966	551027.330	198401.346	450721.490	198330.470	37-33-21.4903	128-58-51.9707	회현동1가 203-4
8967	551817.380	198442.080	451511.580	198371.080	37-33-47.1206	126-58-53.6192	을지로1가 140-4
8968	551843.944	198447.051	451538.150	198376.060	37-33-47.9825	126-58-53.8219	을지로1가 100-1
8969	551907.554	198453.883	451601.740	198382.910	37-33-50.0454	126-58-54.1005	남대문로1가 94-5
8970	551921.771	198313.847	451616.010	198242.910	37-33-50.5074	126-58-48.3951	을지로1가 38-1
8971	551965.600	198305.973	451659.820	198235.050	37-33-51.9285	126-58-37.6695	다동 154-5
8972	551981.568	198278.602	451675.790	198207.690	37-33-52.4464	126-58-36.5543	다동 103-7
8973	551984.319	198231.651	451678.560	198160.750	37-33-52.5359	126-58-34.6414	다동 181-1
8974	551928.136	198210.399	451622.370	198139.470	37-33-50.7130	126-58-33.7747	을지로1가 32-1
8975	551941.376	198166.268	451635.630	198095.350	37-33-51.1428	126-58-31.9766	무교동 44-1
8976	551863.961	198163.003	451558.190	198092.030	37-33-48.6307	126-58-31.8420	을지로1가 8
8977	551828.700	198129.643	451522.940	198058.650	37-33-47.4869	126-58-30.4821	을지로1가 50-1
8978	551784.328	198114.418	451478.580	198043.390	37-33-46.0478	126-58-29.8606	을지로1가 50-1
8979	552057.592	199078.351	451751.710	199007.500	37-33-54.9135	126-59-19.5530	수표동 11-9
8980	552067.412	199192.561	451761.530	199121.710	37-33-55.2325	126-59-24.2073	입정동 262
8981	-	-	451776.420	199265.220	37-33-55.7160	126-59.30.0557	입정동 206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532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계약 심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삭제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운영·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 전자결재 시스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관리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콘텐츠 개발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7.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3. 민원서류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자료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7.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여권 제작에 따른 신원조회 및 여권교부에 관한 사항

제1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급여(4대보험 포함)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4절 제목 “주민생활지원국” 을 “복지환경국” 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 제목 “(주민생활지원과)” 를 “(주민복지과)” 로 하고, 같은 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 을 “복지환경국” 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환경위생과)” 를 “(환경과)” 로 하고, 같은 조 중 “환경위생과장” 을 “환경과장” 으로 하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토목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 를 “토목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하며, 치수방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3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20호까지를 삭제한다.

7. 제설 대책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의에 관한 사항
3.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교육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6.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7.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수방 대책에 관한 사항
9. 하수행정의 종합조정제에 관한 사항
10. 하천·하수도·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1. 배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지하수 일시급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13. 지하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 1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 중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를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로 한다.

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9조를 제40조로 하며,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2. 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 제조업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3. 위생업소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 4.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38조제3호 중 “만성전염병” 을 “만성감염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급성전염병” 을 “급성감염병”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민원봉사과” 를 “민원여권과” 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 를 “민원여권과” 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 를 “민원여권과” 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 을 “민원여권과장” 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환경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별표2]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5편 주민생활지원”을 “제5편 복지환경”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감사담당관) ①~②(생략) ③ (생략) 1.~11.(생략) <u><신 설></u>	제3조(감사담당관)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11.(현행과 같음) <u>12. 계약심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u>			
제8조의2(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생략)	<삭 제>			
제9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3. 민원서류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자료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제9조(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운영·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 전자결재시스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관리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콘텐츠 개발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7. CCTV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여권과)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여권 제작에 따른 신원조회 및 여권 교부에 관한 사항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3. 민원서류에 관한 사항 4. 제증명 발급 및 민원행정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자료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7.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9. 여권 제작에 따른 신원조회 및 여권 교부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무과) (생략) 1.~7. (생략) <u><신 설></u>	제14조(재무과)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급여(4대보험 포함)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제4절 <u>주민생활지원국</u>	제4절 <u>복지환경국</u>
제18조(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지방서 기관으로 보하고, <u>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및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u>	제18조(복지환경국) ----- -----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주민생활지원과) <u>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u> 1.~10.(생략) 11. <u>주민생활지원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제19조(주민복지과) <u>주민복지과장</u> ----- ----- 1.~10.(현행과 같음) 11. <u>복지환경국</u> ----- -----
제23조(환경위생과) <u>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6. (생략) 7.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포함)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제조업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위생업소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10.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23조(환경과) <u>환경과장</u> ----- ----- 1.~6.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31조(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건설관리과장·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목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u>	제31조(건설교통국) ----- ----- ----- 토목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하며, 치수방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보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토목과) (생략) 1.~6.(생략) 7. 수방 및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8. 하수행정의 종합조정제에 관한 사항 9. 하천·하수도·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배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하수 일시급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 의에 관한 사항 16.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18. 재난대비 교육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19.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0.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토목과) (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33조의2(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 의에 관한 사항 3.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교육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6.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7.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수방 대책에 관한 사항 9. 하수행정의 종합조정제에 관한 사항 10. 하천·하수도·유수지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배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일시급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보건소)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의무 또는 보건)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보건소) ----- -----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 -----		
<신 설>				제38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 제조업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위생업소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4.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38조(지역보건과) (생략) 1~2. (생략) 3.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8. (생략) 9. 급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0. (생략)		제39조(지역보건과)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8. (현행과 같음) 9. 급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제39조(의약과) (생략) 1.~16. (생략)		제40조(의약과) (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제40조(동장의 직급) ① (생략) ②(생략) 1.~43.(생략)		제41조(동장의 직급) ①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43.(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11.6.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부서 통합 : 민원여권과
- 부서 신설 : 치수방재과, 위생과
- 국 및 부서 명칭 변경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환경과

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실무에 적합하게 담당(팀) 조정

- 감사담당관에 기술심사팀 신설
- 전산정보과에 CCTV관리팀 신설

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업무내용 일부 변경

- 법 명칭 변경 : 전염병 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 시행)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53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211	851	25	104	23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952	658	13	96	185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0	1	
행정	3	3			
행정·시설	2	2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8	30	1	12	15
행정	36	20	1		15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전산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0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계약직)	8			8	
행정 또는 감사(계약직)	1	1			
6급 소계	209	153	3	19	34
행정	143	102	3	8	30
세무	11	11			
사회복지	4	3			1
전산	1	1			
공업(기계1,전기2,화공1)	4	4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건축6,지적3,토건1)	16	16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통신	1	1			
행정·전산·통신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의무(계약직)		2			2	
디자인(계약직)		<u>1</u>	<u>1</u>			
7급 소계		295	214	6	30	45
행정		182	<u>128</u>	6	<u>8</u>	40
세무		21	21			
사회복지		13	7		1	5
전산		2	2			
공업(기계2, 전기3, 화공3)		8	8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u>3</u>		<u>4</u>	
의료기술		4			4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건축11,지적6)		31	31			
통신		1	1			
건축(계약직)		1	1			
도시계획건축(계약직)		1	1			
전산(계약직)		1	1			
토목(계약직)		<u>1</u>	<u>1</u>			
교통(계약직)		2	2			
디자인(계약직)		1	1			
의무(계약직)		1			1	
간호·약무·의료기술(계약직)		1			1	
홍보(계약직)		1	1			
8급 소계		285	193	2	28	62
행정		164	<u>104</u>	2	<u>5</u>	53
세무		28	28			
사회복지		11	2			9
전산		5	5			
공업(기계4,전기4,화공1)		9	9			
녹지		4	4			
보건		5	<u>0</u>		<u>5</u>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시설(토목18,건축10,지적6)		34	34			
통신		2	2			
교통(계약직)		1	1			
전산(계약직)		1	1			
조경녹지(계약직)		1	1			
9급 소계		98	62	1	6	29
행정		50	21	1		28
세무		9	9			
사회복지		3	2			1
전산		3	2		1	
공업(기계2,전기3,화공1)		6	6			
녹지		2	2			
보건		2	0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시설(토목7,건축3,지적4)		14	14			
통신		1	1			
영양사(계약직)		1			1	
영사(계약직)		1	1			
전기관리(계약직)		1	1			
기록물관리(계약직)		1	1			
사진촬영(계약직)		1	1			
별정직 계		16	9	7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3	3			
비서		1	1			
화생방관리원		1	1			
체육지도사		1	1			
7급상당 소계		10	5	5		
비서		3	1	2		
화생방관리원		2	2			
체육지도사		1	1			
식품영양사		1	1			
속기사		3		3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기능직 계		242	183	5	8	46
6급 소계		8	8			
전기		1	1			
기계(기계)		1	1			
운전		2	2			
위생(사역)		1	1			
사무보조(워드)		2	2			
방호(경비)		1	1			
7급 소계		43	38	0	1	4
전기		4	4			
기계(기계)		3	3			
운전		8	8			
농림(원예)		2	2			
간호조무		1			1	
위생(사역)		3	3			
사무보조(워드)		10	6			4
조무(조무2, 지도4)		6	6			
방호(경비)		6	6			
8급 소계		48	36	1	0	11
전기		4	4			
기계(기계3,영사1)		4	4			
운전		10	10			
위생(사역)		1	1			
사무보조(워드)		13	1	1		11
조무(조무1,사승1,지도10)		12	12			
방호(경비)		4	4			
9급 소계		108	72	4	6	26
전기		5	5			
기계(기계)		4	2	1		1
운전		38	20	2	5	11
위생(사역)		4	4			
사무보조(워드38, 전산4)		42	27		1	14
조무(조무)		3	3			
방호(경비)		12	11	1		
10급 소계		35	29	0	1	5
전기		5	5			
기계(기계)		3	3			
운전		13	8		1	4
사무보조(워드)		10	9			1
방호(경비)		4	4			

비 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2010. 12. 29)에 따라 기능직 조무(지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함.

가. 기능직 조무(지도)원 직급별 별도 관리 정원표

구 분		계	8급	9급
직 렬	직 류			
조 무	지 도	31	15	16

나. 기능직 조무(지도)원은 자연감소로 결원이 발생하는 직급으로 결원 수 만큼 하위 직급에서 승진임용은 가능하되, 신규 충원은 불가함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제2조관련)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952	675	13	79	185	일반직 계	952	658	13	96	185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0	1		4급 소계	6	5	0	1	
행정	3	3				행정	3	3			
행정·시설	2	2				행정·시설	2	2			
보건·의무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8	30	1	12	15
행정	36	20	1		15	행정	36	20	1		15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0		2	
행정·시설	3	3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의무·간호	1			1	
의무(계약직)	8			8		의무(계약직)	8			8	
행정 또는 감사 (계약직)	1	1				행정 또는 감사 (계약직)	1	1			
6급 소계	209	157	3	15	34	6급 소계	209	153	3	19	34
행정	144	107	3	4	30	행정	143	102	3	8	30
세무	11	11				세무	11	11			
사회복지	4	3			1	사회복지	4	3			1
전산	1	1				전산	1	1			
공업(기계1, 전기2, 화공1)	4	4				공업(기계1, 전기2, 화공1)	4	4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토건1)	16	16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토건1)	16	16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통신	1	1				행정·통신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 (행정4, 토목1, 건축1)	6	6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의무(계약직)		2				2	의무(계약직)		2				2
<신 설>							디자인(계약직)						
7급 소계		295	219	6	25	45	7급 소계		295	214	6	30	45
행정		182	131		6	5	행정		182	128		6	8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3	7			1	사회복지		13	7			1
전산		2	2				전산		2	2			
공업(기계2, 전기3, 화공3)		8	8				공업(기계2, 전기3, 화공3)		8	8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7	5			2	보건		7	3			4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통신		1	1				통신		1	1			
건축(계약직)		1	1				건축(계약직)		1	1			
도시계획건축(계약직)		1	1				도시계획건축(계약직)		1	1			
전산(계약직)		1	1				전산(계약직)		1	1			
기획홍보(계약직)		1	1				<삭 제>						
<신 설>							토목(계약직)						
교통(계약직)		2	2				교통(계약직)		2	2			
디자인(계약직)		1	1				디자인(계약직)		1	1			
의무(계약직)		1				1	의무(계약직)		1				1
간호·약무·의료기술(계약직)		1				1	간호·약무·의료기술(계약직)		1				1
홍보(계약직)		1	1				홍보(계약직)		1	1			
8급 소계		285	198	2	23	62	8급 소계		285	193	2	28	62
행정		164	107		2	2	행정		164	104		2	5
세무		28	28				세무		28	28			
사회복지		11	2			9	사회복지		11	2			9
전산		5	5				전산		5	5			
공업(기계4, 전기4, 화공1)		9	9				공업(기계4, 전기4, 화공1)		9	9			
녹지		4	4				녹지		4	4			
보건		5	2			3	보건		5	0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통신		2	2				통신		2	2			
교통(계약직)		1	1				교통(계약직)		1	1			
전산(계약직)		1	1				전산(계약직)		1	1			
조경녹지(계약직)		1	1				조경녹지(계약직)		1	1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99	65	1	4	29	98	62	1	6	29	
행정	51	22	1		28	50	21	1		28	
세무	9	9				9	9				
사회복지	3	2			1	3	2			1	
전산	3	2		1		3	2		1		
공업(기계2,전기3, 화공1)	6	6				6	6				
녹지	2	2				2	2				
보건	2	2			0	2	0			2	
의료기술	2			2		2			2		
환경	1	1				1	1				
시설(토목7,건축3, 지적4)	14	14				14	14				
통신	1	1				1	1				
영양사(계약직)	1			1		1			1		
영사(계약직)	1	1				1	1				
전기관리(계약직)	1	1				1	1				
기록물관리(계약직)	1	1				1	1				
사진촬영(계약직)	1	1				1	1				
별정직 계	16	9	7			16	9	7			
5급상당 소계	3	1	2			3	1	2			
비서	1	1				1	1				
전문위원	2		2			2		2			
6급상당 소계	3	3				3	3				
비서	1	1				1	1				
화생방관리원	1	1				1	1				
체육지도사	1	1				1	1				
7급상당 소계	8	5	3			10	5	5			
비서	3	1	2			3	1	2			
화생방관리원	2	2				2	2				
체육지도사	1	1				1	1				
식품영양사	1	1				1	1				
속기사	1		1			3		3			
8급상당 소계	2		2			0		0			
속기사	2		2			0		0			
기능직 계	242	183	5	8	46	242	183	5	8	46	
6급 소계	8	8				8	8				
전기	1	1				1	1				
기계(기계)	1	1				1	1				
운전	2	2				2	2				
위생(사역)	1	1				1	1				
사무보조(워드)	2	2				2	2				
방호(경비)	1	1				1	1				

현 행						개 정 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7급 소계		43	38	0	1	4	7급 소계		43	38	0	1	4
전기		4	4				전기		4	4			
기계(기계)		3	3				기계(기계)		3	3			
운전		8	8				운전		8	8			
농림(원예)		2	2				농림(원예)		2	2			
간호조무		1			1		간호조무		1			1	
위생(사역)		3	3				위생(사역)		3	3			
사무보조(워드)		10	6			4	사무보조(워드)		10	6			4
조무(조무2, 지도4)		6	6				조무(조무2, 지도4)		6	6			
방호(경비)		6	6				방호(경비)		6	6			
8급 소계		48	36	1	0	11	8급 소계		48	36	1	0	11
전기		4	4				전기		4	4			
기계(기계3, 영사1)		4	4				기계(기계3, 영사1)		4	4			
운전		10	10				운전		10	10			
위생(사역)		1	1				위생(사역)		1	1			
사무보조(워드)		13	1	1		11	사무보조(워드)		13	1	1		11
조무(조무1, 사송1, 지도10)		12	12				조무(조무1, 사송1, 지도10)		12	12			
방호(경비)		4	4				방호(경비)		4	4			
9급 소계		108	72	4	6	26	9급 소계		108	72	4	6	26
전기		5	5				전기		5	5			
기계(기계)		4	2	1		1	기계(기계)		4	2	1		1
운전		38	20	2	5	11	운전		38	20	2	5	11
위생(사역)		4	4				위생(사역)		4	4			
사무보조(워드38, 전산4)		42	27		1	14	사무보조(워드38, 전산4)		42	27		1	14
조무(조무)		3	3				조무(조무)		3	3			
방호(경비)		12	11	1			방호(경비)		12	11	1		
10급 소계		35	29	0	1	5	10급 소계		35	29	0	1	5
전기		5	5				전기		5	5			
기계(기계)		3	3				기계(기계)		3	3			
운전		13	8		1	4	운전		13	8		1	4
사무보조(워드)		10	9			1	사무보조(워드)		10	9			1
방호(경비)		4	4				방호(경비)		4	4			

<신 설>

비 고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2010. 12. 29)에 따라 기능직 조무(지도)원은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다음과 같이 별도 관리함.

가. 기능직 조무(지도)원 직급별 별도 관리 정원표

구 분		계	8급	9급
직 렬	직 류			
조 무	지 도	31	15	16

- 가. 기능직 조무(지도)원은 자연감소로 결원이 발생하는 직급으로 결원 수 만큼 하위 직급에서 승진 임용은 가능하되, 신규 총원은 불가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11.6.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 증원 : +1명(행정9급 △1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에서 직속기관(보건소)으로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 (17명)
- 다. 과 신설 및 통합에 따라 일반직 5급 직렬 조정
- 라. 도시디자인분야 전문가 채용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반직 6급 직렬 조정
- 마. 한류스타 거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직 직렬 변경
 - 기획예산과 계약직 다급(기획홍보) △1명 ⇒ 문화체육과 계약직 다급(토목) +1명
- 바. 별정직 정원책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속기사) 직급 조정
- 사. 기능직 조무(지도)원 :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 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534호

서울특별시중구투자심사업무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구투자심사업무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구투자심사업무에관한규칙” 를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로 한다.

제1조항 중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용자심사 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 라한다)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용자사업(이하 투자사업 이라 한다)” 를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규칙」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용자사업” 로 한다.

제2조 중 “투자사업” 을 “재정투·용자사업(이하 “투자사업” 이라 한다)” 로 하고, “중구” 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총사업비 3억원이상 5억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같은조같은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을 “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같은조제5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른” 로 한다.

제7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제3조에 따라” 로 하고,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5인” 을 “1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4조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 “제9조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 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인” 을 “1명”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중구투자심사업무에 관한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 라한다)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 이라 한다)</u>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심사기준) <u>투자사업</u>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중구</u>의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3.~5.(생략) <p>제3조(심사대상) ① 투자사업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u>기타</u> 구청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p>② (생략)</p> <p>제4조 (생략)</p> <p>제5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u>당해</u>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u>10억원</u> 이상 늘어난 사업 3. (생략) <p>제6조(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u>당해</u>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u>지방재정법</u>」 및 「<u>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규칙</u>」에 따라 <u>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u> -----</p> <p>제2조(심사기준)<u>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 라 한다)</u>----- 3.~5.(현행과 같음) <p>제3조(심사대상) 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현행과 같음) 2. <u>총사업비 3억원이상 5억원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u> 3. <u>그 밖에</u> -----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재심사)-----</p> <p>-- <u>해당</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u>20억원</u>----- 3. (현행과 같음) <p>제6조(심사의 절차)①-----</p> <p>----- <u>해당</u> -----.</p>

현 행	개 정 안
<p>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p>	<p>----- 해당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각 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p>④ ----- 제3조에 따른 -----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⑤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한 후 서울특별시중구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 심의하여야 한다.</p>	<p>⑤ ----- 제3조에 따른 ----- ----- -----</p>
<p>제7조(심사의 실시) 중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거나 사업 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p>	<p>제7조(심사의 실시)----- 제3조에 따라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해당 ----- ----- ----- 해당 ----- -----</p>
<p>1.~4. (생략)</p>	<p>1.~4. (생략)</p>
<p>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생략)</p>	<p>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각 과장은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예산과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 ----- ----- 해당 ----- -----</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투자심사 대상의 적정성, 재원조달 능력등을 심사</p>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p>

현 행	개 정 안
<p>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p> <p>1.~3. (생략)</p>	<p>----- ----- ----- 15명 ----- -----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3.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임기) ①(생략)</p> <p>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9조의2(임기) ①(현행과같음)</p> <p>② 제9조제2항에 따라 ----- -----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 ----- -----</p>
<p>제10조~제11조(생략)</p>	<p>제10조~제11조(현행과 같음)</p>
<p>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③(생략)</p>	<p>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 ----- ②~③(현행과 같음)</p>
<p>제13조(생략)</p>	<p>제13조(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 등)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수당 등) 제9조제2항에 따라 ----- ----- -----</p>
<p>제15조~제16조(생략)</p>	<p>제15조~제16조(현행과 같음)</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2010.12.20)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제명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 등 규칙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대상사업 신설 (제3조)

: 자치구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나. 재심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제5조제2호)

: 제5조제2호 자치구 자체 재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서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금액 상향조정

다.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